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

#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1호)과 관련됩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금농가 방역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23.4.18. 개정·공포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시행일 '23.7.19.).

3. 이와 관련하여 각 시·도 및 관련 협회·단체에서는 붙임의 개정사항에 대한 축산농가 등 관계자 교육·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축산정책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동물위생방역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서울특별시장(동물보호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 인천광역시장(농축산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장, (사)한국메추리산업연합회장, 대한꿩협회장, 한국특수가축협회장

| 주무관 | 박해성 | 서기관 | 박경일 | 방역정책과장 | 전결 2023. 4. 18. 이동식 |
|---|---|---|---|---|---|
| 협조자 | | | | | |

시행 방역정책과-2794 (2023. 4. 18.)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20 팩스번호 044-868-0628 / phsk@korea.kr / 대국민 공개